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3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권명호·정희용·임이자

김형동 • 정운천 • 정동만

정진석 • 윤영석 • 최춘식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 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 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의 경우 지역 기반시설의 산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2조의2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 업집적시설,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 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
- 8.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2조의24제1항 중 "제62조의23제2항에"를 "제62조의23제3항에"로 한 다.

제62조의25제1항 중 "제62조의23제2항에"를 "제62조의23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
역의 지정) ① (생 략)	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
	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
	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
	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u>업단지</u>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상점가

② ~ ⑤ (생 략)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 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 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 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 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 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 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상권활성화구역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
- 8.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 지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 역에 대한 지원 등) ① -----

-----제62조의23제3항

②·③ (현행과 같음)

역의 지정 해제) ① -----

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 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u> 62조의23제3항에
② (현행과 같음)